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

2. 조치일 : 2020. 2. 26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사항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고객확인 업무 관련 내규 및 운영절차 불합리

[1] 내규 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업무규정」에 법인고객의 '25% 이상 주주' 또는 '최대주주 등'이 자연인이 아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실제 소유자 확인 업무 절차에 관한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

[2] 고객확인 업무매뉴얼인 「KYC 절차서」 및 「요주의 리스트 관리 절차서」를 제정한 이후 검사착수일(2019.△.△.)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일부 고객확인 업무 절차가 실제 운영내용과 불일치하고,

○ 각 부서가 고객확인을 이행한 후 준법감시부에서 고객확인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

○ 고객확인 업무매뉴얼을 실제 업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,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

(2)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

□ 2017.6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사착수일(2019.11.4.) 현재 총 47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중이나,

○ 전체 추출기준(◎개) 중 ◎개 추출기준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시스템 마련 이후 한 건의 의심거래 경보도 발생하지 않았고,

○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가 발생한 ◎개 추출기준 중 ◎개 추출기준은 고객의 동일 금융거래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중복해서 경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,

○ 특정 단일고객 관련 거래에 대한 경보 발생건수(◎건)가 전체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 발생건수(총 ◎건)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,

○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출기준 운영현황을 분석·점검하여 임계치를 조정하거나 추출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